강좌명 : 우리 역사와 성풍속

2강 : 결혼제도와 성문화 (4.18)

1교시 : 처가살이에서 시집살이로
2교시 : 일부일처와 일부다처

1. 조선시대 결혼제도

1) 유교적 결혼관의 확산
□ 독신의 금지
-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시대
- 불효 중에 후손이 없는 일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
-「맹자」에 혼기가 찼는데도 장가가지 못한 총각을 '광부曠夫', 시집못간 처녀를 '원녀怨女'라고 표현함.
- 노총각, 노처녀들은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함께 구제대상임
- 특히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고 하여 미혼 남녀들을 구제함. 성종 때에는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만약 집안이 가난하면 쌀이나 콩을 주어 혼수로 삼아 결혼할 수 있도록 함

2) 본처만을 인정한 일부일처제
- 실제는 다처가 인정된 사회
- 남녀가 각기 다른 결혼 문화 : 남자들은 본처 외에도 첩을 둘 수 있었던 반면, 여자들은 평생 한 남자만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일부종사를 강요받음
- 달라진 결혼제도의 영향
- 조선시대에는 가계계승의 질서를 강조하는 이른바 '종법宗法'이 새로운 가족질서의 원리로 받아들여졌는데, 처가 있는데도 또다시 처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종법적 질서에 위반되는 문제
- 태종 13년(1413), 처가 있는데 또다시 처를 맞이하는 이른바 '유처취처有妻取妻'가 정식으로 금지됨.
.처가 있는데도 또 처를 맞이하면 장 90대에 처하고 후처와 이혼시킨다.
.정처로서 첩을 삼으면 장 100대에 처한다.

.처가 있는데 첩으로서 정처를 삼으면
장 90대에 처하고 본래대로 환원조치한다.

2. 200년도 안되는 시집살이의 역사

1) 전통적인 결혼풍속

- '남귀여가男歸女家' 혼속 : 남귀여가의 혼속은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와 같이 신랑이 일정기간 신부의 집에 가서 거주하는 형태의 결혼풍속을 말한다.

2) 유교식 혼례의 확산

- 시집가는 혼인 풍속은 우리 나라 고유의 풍속이 아니라 유교식 중국 혼례인 '친영親迎'에서 비롯된 것
- 친영이란 '친히 맞이한다'는 뜻으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후,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 남자집 중심의 결혼풍속
- 친영제에서는 그 동안 남자집에서 부담했던 혼수를 반대로 여자집에서 부담.
- 남귀여가 혼속과 절충된 '반친영'이란 것이 오랫동안 결혼풍속으로 자리잡게 됨. 반친영이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러온 오랜 관행은 인정하되, 다음날(또는 3일 후) 또는 길게는 1년 후에 신랑집으로 와서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는 방식임

3) 중매결혼과 선보기

-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는 것이 남녀간의 예우라고 생각하던 시절
- 가문과 신분에 따른 중매결혼→ 주혼자가 결혼을 주관→ 만약 주혼자 없이 결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화됨은 물론이고, 심하게는 화간이라 하여 간통으로 처벌

4) 혼례 절차

- 혼례는 육례 : 조선시대의 혼례는 중국의 유교식 혼례 절차를 본따 '육례六禮'를 바탕으로 함. 육례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행해야 할 여섯 가지 의식과 절차로, 여섯 가지란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이다.
- 조선시대 혼례 절차는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참고
- 혼사를 합의하는 '의혼'
- 납채納采와 납폐納幣

- 사실상의 혼례식 '초례醮禮'
- 신행과 현구구례見舅姑禮

3. 결혼풍속의 변화

1)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 : 자손의 번창을 위해서 근친혼은 물론이고 동성동본의 결혼마저도 엄격히 규제 ※ 금지된 결혼을 했을 경우, 동성동본혼은 장형 60대와 이혼이었고, 근친혼일 경우엔 사형
- 동성혼의 금지는 조선왕조에 들어와 더욱 강화, 고려시대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동관이성同貫異姓(본관이 같은 각각의 성) 간이나 이관동성(異貫同姓:본관이 다른 동성) 간의 결혼도 금지

2) '월삼성越三姓' : 모계 쪽의 성씨를 3대에 걸쳐 건너 뛰어 결혼하기도 했다.
3) 타 신분간의 혼인 금지
4) 사제간 혼인 금지 및 궁합
5) 조혼풍속

6) 재가 금지 : 우리나라에서 과부들의 재가가 금지된 것은 조선시대. 수절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 말부터. 공양왕 원년(1389)에 "6품 이상의 처첩은 남편 사후 3년간 재가할 수 없으며, 수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절을 포상한다"는 것이 재가 문제에 대한 최초의 규제. 태종은 양반의 정처로서 세 지아비를 섬긴 여자, 즉 삼가三嫁한 여자들을 '자녀안'에 기록하도록 했다. 자녀안이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실행녀들의 명부인데, 유부녀가 음행하면 '자녀안'에 기록하고, 침공針工, 즉 종으로 신분을 격하했던 제도였다. 고려시대 '자녀안'에 등록되는 경우는 간통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여필종일女必從一을 내세운 조선은 여자의 삼가 또한 음행으로 보아 '자녀안'에 기록케 했다.
삼가가 아닌 재가까지도 금지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대에 이르러서다. 성종 8년(1477)에 조씨라는 과부의 재가가 문제화되면서 과부들의 재가가 법적 규제로까지 이어졌다.

7) 서민들의 과부 탈출
- 보쌈(과부 업어가기)의 성행

- 한자말로는 '박과縛寡' '겁과劫寡'라고도 하며, 우리 말로는 '과부 메어간다'(평안도), '과부 등진다'(함남.경북), '과부 퉁퉁이한다'(경북), '과부 통태 끼운다'(경남 동래.부산), '과부 포대 쌈한다'(전남) 등으로 표현
- 보쌈은 주로 중류 이하, 특히 하류사회에서 성행한 풍속

4. 축첩제도

1) 국가가 공인한 축첩제도
- 중국에서 제후는 한 번 장가드는데 아홉여자를 얻을 수 있고, 경대부는 일처이첩, 선비는 일처일첩
- 조선시대에 주자학과 함께 '성인인 공자도 첩을 거느렸다'고 하여 도덕군자라던 선비들도 첩 두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음.
- 첩의 유래 : 고구려가 소국인 옥저로부터 미녀들을 상납받아 이들을 비첩으로 삼았고, 신라의 진골들도 축첩을 했다고 전해짐 고려시대 6품관 이상은 모두 첩을 두었고, 절의 중까지도 첩을 둘 수 있었음.
- 조선시대 축첩의 의미 : 조선시대의 축첩제도는 첩이 적처가 될 수 없다는 엄격한 규정과 함께 첩의 존재를 공식화
- 처첩제를 바탕으로 한 결혼제도는 남자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인정한 불평등한 결혼제도

2) 축첩 반대 : 1899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와 동일 회원으로 조직된 친목단체 '여우회女友會'가 축첩반대 시위의 주인공. '일부이실 패륜지도 덕의지실 一夫二室 悖倫之道 德義之失'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스르는 것은 윤리에 거슬리는 길이요, 덕의를 잃은 행위'